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딥페이크 범죄 방지>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40호)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53호)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75호)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23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35호)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79호)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42호)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92호)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11
1. 총괄적 검토	11
2. 딥페이크 범죄 관련 정보를 권리침해정보·불법정보에 포함 등	15
3. 사업자의 책무	29
1)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29
2)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의무	40
3) 징벌적 손해배상	44
4. 정부의 책무	47
1) 시책의 마련	47
2) 사업자 자율규제에 대한 개선권고	52
5.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54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240호)

가. 발 의 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27.

다. 회 부 일 : 2024. 8. 28.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253호)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8. 27.

다. 회 부 일 : 2024. 8. 28.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275호)

가. 발 의 자 : 우재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28.

다. 회 부 일 : 2024. 8. 29.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323호)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23인

나. 발 의 일 : 2024. 8. 29.

다. 회 부 일 : 2024. 8. 3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제2203335호)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8. 29.

다. 회 부 일 : 2024. 8. 30.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제2203479호)

가. 발 의 자 : 김용민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9. 2.

다. 회 부 일 : 2024. 9. 3.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제2203542호)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2.

다. 회 부 일 : 2024. 9. 3.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제2203592호)

가. 발 의 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3.

다. 회 부 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240호, 김남희의원안)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253호, 박용갑의원안)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라도 눈 깜짝할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확인시키고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도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임.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넘어 인격적 살해를 당하게 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혹시 주변 사람이 볼까 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

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44조의7·제70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275호, 우재준의원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등).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323호, 김장겸의원안)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가상의 글·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가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만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335호, 이수진의의원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불법 영상물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또한,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479호, 김용민의원안)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불법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SNS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542호, 박충권의원안)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

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제44조의11 신설 등).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592호, 김현정의원안)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

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함.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의 진위 여부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딥페이크 정보를 명예훼손, 성범죄,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는 2023년 10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검증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인증 및 워터마크 지침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구글, 오픈AI 등 7개 기업¹⁾은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정부와 합의하였음²⁾.
- 또한 유럽연합은 2024년 3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생성·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

1)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인플렉션, 앤스로픽

2) 이승환,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국회미래연구원, 23-15호.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킨 바 있음³⁾.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하거나 편집물 등·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⁵⁾,

-
- 3) 4.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범죄 행위를 탐지, 방지, 조사 또는 기소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콘텐츠가 명백히 예술적, 창의적, 풍자적, 허구적 유사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이 호에 규정된 투명성 의무는 그러한 생성 또는 조작된 콘텐츠를 저작물의 전시 또는 향유를 방해하지 않게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후략]
 - 4)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5)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딤페이크 정보 전반에 대한 표시의무나 사업자의 책무,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없음.

○ 이에 개정안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딤페이크 정보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딤페이크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딤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법안소위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접속·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딤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안)을 의결(2024.9.19.)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법률 간 중복이나 모순·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편, 개정안들과 유사한 취지에서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표시의 무 부과 등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동법 개정안 2건⁶⁾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6) 제2200713호(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제2203627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2. 딥페이크 범죄 관련 정보의 유통금지 등

가. 개정안 요지

- (우재준의원안)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
- (박용갑·우재준·박충권의원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저장)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
- (김남희·김용민의원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⁷⁾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등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7)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1) 허위 내용의 정보 및 딥페이크 범죄 관련 정보의 유통금지

현행	박용갑의원안	우재준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① 이용자는 <u>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u> 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① ---- --- <u>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u> ----- ----- ----- ----- 1. <u>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u> 2. <u>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u> 3. <u>타인의 의사</u>	

현행	박용갑의원안	우재준의원안	박충권의원안
②·③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u>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u> <u>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u>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u>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현행	박용갑의원안	우재준의원안	박충권의원안
<u><신설></u>	2의2.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저장한 정보	<u>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u> 2의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	1의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3.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	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 ----- ----- ----- -----

현행	박용갑의원안	우재준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2) 딥페이크 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한 확대

현행	김남희의원안	김용민의원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 정보 또는 불법정보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우재준의원안은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 정보를 권리침해정보와 불법정보 모두에 포함하려는 것이고,
박용갑·박충권의원안은 딥페이크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려는 것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⁸⁾.
- 권리침해정보에 대해서는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⁹⁾.
-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는 음란정보, 사행성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8)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9)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로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있음¹⁰⁾.

-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¹¹⁾,

10)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내용규제 체계>

구분	권리침해정보(제44조)	불법정보(제44조의7)
의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음란정보, 사행성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규제방법	(제44조의2) 권리침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7 제2항·제3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 허위정보·딥페이크 정보를 권리침해정보에 포함

○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권리침해정보와 불법정보의 규제체계를 달리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를 제44조에 따른 유통금지 정보에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른 권리침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인격권설)와 정보통신망법상 침해되는 권리를 인격권에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견해(재산권포함설)의 대립이 있으나¹²⁾,
- 판례는 현행 제44조의 권리침해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의미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인격권설의 입장으로 보임¹³⁾.
- 따라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현행 제44조에 의해서도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권리침해 정보보다는 불법정보 체계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44조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에

12) 이창범·황창근·정필운,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p.79

13) 대법원 2012.12.4. 결정, 2010마817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 허위정보·권리침해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

- 허위정보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명예훼손 정보와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율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¹⁴⁾, 개정안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과 유사한 의미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허위정보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의 경우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이미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이 현행 조문과 별도로 새롭게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딥페이크 정보**의 경우, 개정안의 입법 취지, 정보 유통자의 의도, 정보의 용도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불법정보에 포함될 딥페이크 정보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4)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 먼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저장)한 정보’라는 개정안의 문언상으로는 사람이 촬영되거나 사람의 음성이 포함된 정보가 자막, 보정 등의 일부 편집만 이루어지더라도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가령 뉴스에 타인의 얼굴 등이 방송된 경우, SNS에 자신을 촬영하면서 타인이 함께 촬영되어 게시된 경우, 포토샵 등 기술 기반 도구, CG 등 인공적인 기술을 이용한 실사에 비견되는 콘텐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딥페이크 영상물·음성물 등을 규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정보 유통자의 의도나 정보의 용도와 무관하게 딥페이크 정보를 모두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정치적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도 불법정보로 규정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EU 인공지능법 제50조 제4항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의무의 제한으로 콘텐츠가 명백히 예술적, 창의적, 풍자적, 허구적 유사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¹⁵⁾.

15) 4.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범죄 행위를 탐지, 방지, 조사 또는 기소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콘텐츠가 명백히 예술적, 창의적, 풍자적, 허구적 유사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의

○ 따라서 딥페이크 정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성격을 갖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훼손하거나 허위의 정보로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대상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까지 확대하는 김남희·김용민의원안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용하는 입장임.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손해의 목적 없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난·금융 관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정보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규제 대상 허위정보의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허위정보 유통을 음란·도박정보 등의 경우와 같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유통을 제한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딥페이크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정보를 일괄적으로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규정이 공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이 호에 규정된 투명성 의무는 그러한 생성 또는 조작된 콘텐츠를 저작물의 전시 또는 향유를 방해하지 않게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후략]

인에 대한 보도·논평 목적의 촬영물, 편집물 등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규제 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손해를 경제적 손해에 한정할 것인지 등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허위정보 여부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판단할 수 없어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고, 임의로 이를 판단하는 경우 사적 검열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촬영물 또는 음성물 등 정보의 범위가 넓고, 모든 합성물 등이 불법적 요소를 가지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허위정보의 경우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만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고, 딥페이크 정보의 경우 적용되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규정하는 불법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사업자의 책무

1)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가. 개정안 요지

구분	의무의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표시의무 위반 정보에 대한 직권표시·삭제 등 유통방지의무 - 표시의무 위반 이용자에 대한 경고, 이용 정지·해지, 수익 제한 등 재발방지 조치 의무 - (사업의 종류·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상정보의 표시방법 마련 및 이용자 고지 의무 ※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인공지능 생성물 제작·편집자	- 가상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모든 사람	- 가상정보 표시의 제거·변경 금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공급자	- 인공지능 생성물 식별 수단 마련 등 이용자 보호조치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장겸의원안
<신설>	제44조의11(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표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

현행	김장겸의원안
	함으로써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글,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한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가상 정보의 표시”라 한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상 정보의 표시 방법과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가상 정보의 표시

현행	김장겸의원안
	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가상 정보의 표시를 하거나 삭제 등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이용 정지 또는 해지, 수익제한 등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글,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생성 또는 수정·편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자는 인공지능 생성물을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

현행	김장겸의원안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의 방법, 제6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1. ~ 4의2. (생략)	③ ----- ----- -----.
<신설>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4의4. (생략)	4의3.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 25. (생략)	4의4.·4의5.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④ (생략)	5.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딥페이크 정보 표시의무 관련

- 첫째, 표시의무자의 범위를 실제 의무이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에게 딥페이크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런데 딥페이크 정보의 경우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접 정보를 생성한 자가 아닌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를 편집하여 유통하는 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딥페이크 정보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의무 이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표시방법 마련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의무 이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는 직접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으나, 단순히 이용자가 정보를 유통하는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도 존재하는바, 직접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게까지 표시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보임.
- 셋째,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에 경우 정보통신망법보다는 현재 논의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¹⁶⁾,
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16)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으며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이나 의무 규정이 없음.

- 또한,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부과하려는 인공지능 기본법안 다수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¹⁷⁾,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는 해당 법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 같은 필요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서 클 것으로 보임.
- 넷째,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함으로써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글,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런데 방송·광고 등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 정도 또한 단순 보정부터 실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사진·영상등의 구현까지 다양한 만큼, 모든 딥페이크 정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 2024.9.19. 현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0053호,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등 총 10건의 AI 기본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임

- 가령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 영상 일부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단순 보정한 경우까지도 표시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일부로서 당연히 딥페이크 정보임을 알 수 있는 경우까지도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표시의무가 이용자의 몰입을 저해할 우려 등의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딥페이크 정보가 사실로 오인됨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 관련

- 첫째,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보임.
- 딥페이크 정보의 경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딥페이크 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삭제의무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①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권리침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삭제·반박내용의 게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¹⁸⁾,

②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정지·제한 등을 명령한 경우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¹⁹⁾ 사업자의 판단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사업자 책무 강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위축 가능성과 함께 이번 딥페이크 문제가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큼에도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실질적인 차별규제 문제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9)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둘째, 딥페이크 정보 삭제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임.
 - 딥페이크 정보 중에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 악의적인 목적이 없거나, 타인의 명예 등 구체적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도 있음에도,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판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삭제의무 이행을 위해 딥페이크 정보로 의심되는 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 및 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시방법 마련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인터넷상의 영리활동을 하는 블로거 등 개인까지 포섭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율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다만 표시의무의 경우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표시의무 미이행 정보가 유해한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율대상인 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생성물의 개념 및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반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생성물 게시자 등 관련 이용주체들에게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인터넷진흥원)는 표시 강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약이나 위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정보통신망에서 생성물을 공유받아 유통하는 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가 현재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표시의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표시의무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며 표시방법에 따라 이용자들도 이를 불편해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에 표시의무 등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중복규제 및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 제76조 제3항 제4호의3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안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제29조 제1항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워터마크)하도록 하며, 제2항은 고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이 자율규제를 규정한 인공지능 기본법안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영역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 어떠한 가중된 책무를 부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 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의무규정만 두고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규정하지 않을 것인지 등은 신중한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개정안 제76조 제3항 제4호의3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용 입장임.

2)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의무

가. 개정안 요지

- (이수진의원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관련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수진의원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료의 보존 및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수진의원안
<신 설>	제44조의11(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수사 협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 및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과

현행	이수진의원안
	기술적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하여 자료 보존 등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경우 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다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신속성과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차원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강유정의원안)에서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촬영물등이 삭제·차단되도록 하는 것과 충돌되는 점 등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중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과 다음과 같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이 사법경찰관에게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3475호)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으로 두 법안의 처리 및 논의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안)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접속·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 의견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요청 시에도 접근 차단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한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²⁰⁾와 유사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0)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개정안 또는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해야 하는 자료 보존 및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알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자료의 보존 및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²¹⁾ 관련 내용의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1)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

가. 개정안 요지

- (김용민의원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가 유통되게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용민의원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⑤ (생략) <u>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14조의2에 따른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u>

다. 검토사항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으로 평가되는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넓은 범위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함.
-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가 유통되도록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에 따른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생성하거나 확산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으며,
직접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반포·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과

중첩되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업자 입장에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되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4. 정부의 책무

1) 시책의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박용갑·박충권·김현정의원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딥페이크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피해 실태 파악
- 딥페이크 정보의 유통 실태 파악
- 딥페이크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 딥페이크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의 촉진
- 딥페이크 정보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그 밖에 딥페이크 정보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박용갑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신설>	제44조의11(합성영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을	제44조의11(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11(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등의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에

현행	박용갑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현정의원안
	대상으로 한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만든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 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관련 시책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이하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현 행	박용갑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현정의의원안
	<u>2. 합성 영상 유통 실태 파악</u> <u>3. 합성 영상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u> <u>4.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u> <u>5.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u> <u>6. 그 밖에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u>	<u>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u> <u>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u> <u>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u> <u>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u> <u>6. 그 밖에 합성 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u>	<u>피해 실태 파악</u> <u>1.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의 유통 실태 파악</u> <u>3.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u> <u>4.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u> <u>5.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u> <u>6. 그 밖에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u>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²²⁾, 제41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보급, 교육·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²³⁾,

22)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삭제 <2020. 2. 4.>

6의2. 삭제 <2020. 2. 4.>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3)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에 따른 시책의 내용이 현행법상 시책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성 영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책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여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현정의원안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며,

개별 정보의 진위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시책 마련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따른 시책 추진 대상은 향후 다른 법률에도 포함되거나 창작성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일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시책 추진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합성영상’ 등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보의 실태를 파악하는지 분별하기 어렵고, 이러한 시책 마련 과정에서 사업자 등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로 이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광범위한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사업자 자율규제에 대한 개선권고

가. 개정안 요지

- (이수진의원안) 정부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이수진의원안
제44조의4(자율규제) ①·② (생략) <u><신설></u>	제44조의4(자율규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 개정안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의 효과적인 유통방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효과적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차원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24) 제44조의4(자율규제)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5.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가. 개정안 요지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
 - (박용갑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재준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저장)한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
 - (박용갑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재준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박충권의원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박용갑의원안	우재준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제70조(벌칙) ① · ② (생략) <신설>	제70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 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는 허위 내용 의 정보로 다 른 사람의 권 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 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 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는 허위 내용 의 정보로 다 른 사람의 권 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 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신설>	④ 타인의 의 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 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 상물 또는 음	④ 타인의 의 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 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 상물 또는 음	

현행	박용갑의원안	우재준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성물을 편집· 합성·가공· 저장한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 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성물을 편집· 합성·가공한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 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 2항의 죄는 피 해자가 구체적 으로 밝힌 의 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 ----- ----- ----- ----- -----.
1. ~ 10. (생			1. ~ 10. (현

현행	박용갑의원안	우재준의원안	박충권의원안
략) <u><신 설></u>			행과 같음) <u>10의2. 제44조의</u> <u>7제1항제1호의</u> <u>2를 위반하여</u> <u>인공지능 기술</u> <u>을 이용하여 사</u> <u>람의 얼굴·신</u> <u>체 또는 음성</u> <u>을 대상으로 한</u> <u>촬영물·영상</u> <u>물 또는 음성</u> <u>물을 대상자의</u> <u>의사에 반하여</u> <u>편집·합성 또</u> <u>는 가공한 자</u>
11. ~ 14. (생 략) ② (생 략)			11. ~ 14. (현 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구성요건 관련

○ 첫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처벌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함.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됨²⁵⁾.
- 특히 개정안들의 경우 아래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현행 법률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개정안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박용갑·우재준의원안의 경우 허위정보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얼굴·신체·음성 대상 촬영물 등과 이에 관한 딥페이크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리’는 재산권, 인격권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타인의 권리침해를 처벌하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박충권의원안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음성 대상 촬영물 등과 이에 관한 딥페이크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이 촬영되거나 사람의 음성이 포함

25) 현재 2008. 11. 27. 선고, 2007헌가24

된 정보가 자막, 보정 등의 일부 편집만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어떠한 행위가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익을 침해·위태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²⁶⁾,

얼굴·신체·음성 대상 촬영물 등과 이에 관한 딥페이크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함에 따라 침해되는 법익이 무엇인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허위정보로 인한 인격권·재산권 침해의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 등과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허위정보 권리침해죄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²⁷⁾,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⁸⁾.

26) 오영근·노수환, 「형법총론」, 박영사, 2024, p.75-77.

27)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 또한 현행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⁹⁾.

○ 셋째,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합성물 등 유포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³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0)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등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
률안 다수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법정형 관련

- 개정안의 법정형이 죄질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인지 논의할 필
요가 있음.
- 헌법상 기본 이념인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할 때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
하고 있음³¹⁾.
-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유사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 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³²⁾,
 -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

31) 현재 2018. 12. 27. 선고, 2017헌바195

32)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³³⁾,

③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³⁴⁾,

④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하여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³⁵⁾,

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반포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

33) 제47조(벌칙) ②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촬영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³⁶⁾.

○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 중 가장 중한 수준으로 보임.

○ 그런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권리침해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이에 따라 개정안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죄질의 수준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죄질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우려가 있어 보임.

36)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히 딥페이크 정보 유통 처벌의 경우에는 정보의 허위성 및 해당 정보를 유통한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가장 중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처벌대상을 구체화하고, 다른 법률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범죄의 양형을 규정함에 있어 권리침해의 양상과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악의적이거나 피해를 줄 의사가 없는 단순 인공지능의 활용과 인공지능 기술이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의 경우에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기만 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만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고, 적용되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규정하는 불법정보의 범

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개정안이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며, 다른 사람의 ‘권리’의 의미가 모호함에도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